

울산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121080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공파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환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울산 남구 C 대 768㎡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2층 405.47㎡를 인도하고,
나. 16,020,130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7. 10.부터 위 가.항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이준영

별지